##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

[시행 2016. 6. 30.] [금융감독원세칙 , 2016. 6. 23., 일부개정]

금융감독원(기업공시제도실), 02-3145-8443

## **부칙** <제호,2016.6.23.>

**제1조**(시행일) 이 세칙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<별표> <신설 2016.6.23>

## 외국 국채증권 주요 설명사항

(제2조의6 관련)

- 1. 발행인에 관한 정보
- 가. 발행국가 명칭
- 나, 신용평가에 관한 사항 (국제신용평가기관의 국가 신용등급, 평가기관, 평가일 등을 포함한다)
- 다. 경제에 관한 사항 (GDP성장률, 물가상슴률, 실업률, 외환보유고,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등 최 근 5년간 발행국가에서 발표한 주요 경제지표를 포함한다)
- 라. 재정에 관한 사항 (최근 5년간 발행국가에서 발표한 대내외 부채현황, 최근 10년간 국가부도발 생 현황 등을 포함한다)
- 2. 투자대상 국채증권에 관한 정보
- 가, 국채증권 명칭
- 나, 국채증권 기본정보(발행일, 만기일, 잔존만기, 발행통화, 표면금리, 만기수익률 등을 포함한다)
- 다. 이자지급에 관한 사항(이자지급주기, 이자지급 관련 특기사항 등을 포함한다)
- 3. 투자위험 관련 정보
- 가, 채권투자 관련 기본적 위험(원금손실위험, 금리변동위험, 신용위험, 유동성위험 등을 포함한다)
- 나, 환율변동 위험 (최근 5년간 환율정보, 환혜지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한다)
- 다. 채권투자 관련 국채증권 발행국가의 제도 변경 위험
- 4. 그 밖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
- 가. 과세에 관한 사항(자본이득, 이자소득, 환차익 등에 대한 과세 관련 사항으로 관련 법령 및 해당 국가와 체결한 조세조약 등에 의한 과세사항을 포함한다)
- 나. 중도매도 및 만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에 관한 사항
- 다. 발행국가 및 국채증권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
- 라, 발행국가의 법령 또는 국채증권 발행조건에 따른 증권의 취득자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(일반투 자자의 취득제한 등을 포함한다)
- 마, 기타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특기 사항